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2918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특별대리인 D

2. E

변론 종결 2019. 11. 26.

판결 선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641,711,927원과,

나.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서 위 가.항 기재 돈과,각 그 중 355,804,321원에 대하여는 1994. 4. 20.부터 1994. 5. 1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5.부터 1994. 4. 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산업폐기물 소각설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했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비 고
1	H	(주) C	G (주)	금435,600,000원	1993.06.10.- 1993.12.09.	
2	I	(주) C	G (주)	금285,000,000원	1993.06.30.- 1993.11.30.	

나. 피고 회사가 G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1994. 4. 12. 338,000,000원을, 1994. 4. 19. 17,804,321원을, 1994. 3. 4. 285,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715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위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09. 8. 12. "피고 회사와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711,827원 및 그 중 355,804,321원에 대하여는 1994. 4. 20.부터 1994. 5. 1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5.부터 1994. 4. 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은 2010. 1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J, 자녀인 피고 K, L, M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느단2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1. 1. 21.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 E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느단1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2011. 1. 21.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바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641,711,927원과, ② 피고 E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과, 각 그중 355,804,321원에 대하여는 1994. 4. 20.부터 1994. 5. 1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8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3. 5.부터 1994. 4. 3.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4.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